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3차 교육위원회)
2018. 12. 3. 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숙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8년 11월 21일

○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정 이유

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적용범위(안 제2조)

나.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
다. 취업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4조)

라. 취업지원센터의 조직(안 제5조)

마. 취업지원센터의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 6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7조의3에 시·도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2018. 3. 27.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조례안 제3조에 교육감이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취업지원센터의 수행 사업과 인력배치 등 취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명시함으로써,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-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이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고,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조문 체계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,

-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충청북도 내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되는 바,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